



「신(新) 출입국·이민정책」 후속 조치

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

- ① 14개 광역지자체와 협업, “광역형 비자 제도” 시범사업 시행
- ② 세계 최고 수준 최우수인재 대상 “탑티어(Top-Tier) 비자” 도입
- ③ 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 관련 민관합동 심의를 거쳐 일반기능인력(E-7-3)·전문인력 비자(E-5) 범위 확대 및 주력산업 비자 요건 완화

□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. 2.(수)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○ 이번 브리핑에서는 '24. 9. 26. 발표된 「신(新) 출입국·이민정책」의 핵심 과제이자 '25. 3. 5. 「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」를 통해 시행 예고된 「광역형 비자」, 「탑티어(Top-Tier) 비자」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「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」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.

□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

□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‘광역형 비자’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

□ 법무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였고,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사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구체적으로 유학 비자(D-2)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0곳(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제주)이며, 특정활동 비자(E-7)*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6곳(대구, 대전, 울산, 경기, 경북, 경남)입니다.

* 특정활동(E-7) 취업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를 제외한 **전문직군(E-7-1), 준전문직군(E-7-2), 일반기능직군(E-7-3) 등 3개 직군 총 8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함**

- 지난 3월 31일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“광역형 비자 심의 위원회”에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 심의 결과 총 14개 광역지자체의 사업계획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광역형 비자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주요 평가 기준

- (추진 필요성) 생활인구·정주인구 증가 등 광역형 비자 도입 취지와 의 합목적성
- (계획의 적절성) 지역 현황 분석,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고유성·차별성 및 사업 활용연계 적절성
- (사회통합 계획) 사회통합정책 지원 등 계획 및 추진실적, 이주민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
- (추진 가능성) 추진체계 구성, 안정성 및 전문성, 의지와 역량, 합리적 추진 절차 마련

- 오늘부터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(유학 비자(D-2))**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10개 광역지자체(4,420명)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 - 우선 서울, 부산, 광주, 강원, 충북,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, 로봇, AI, 이차전지,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^(서울 제외), 서울, 강원, 충북,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,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(부산, 인천, 강원, 전남)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합니다.
 - 전북, 전남,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,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,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합니다.

-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(1년→2년)하여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합니다.

□ **(특정활동 비자(E-7))**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(1,210명)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- 먼저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·로봇공학 등 “대구 5대 신산업분야”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*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합니다.

* 생명과학전문가, 데이터전문가, 전자공학기술자, 기계공학기술자, 로봇공학기술자

- 경기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, 데이터·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도입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합니다.

-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,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합니다.

- 한편,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, 법무부와 관계부처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 예정입니다.

□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광역지자체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'26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.

-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, ▲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, ▲사회통합정책 참여율, ▲불법체류율, ▲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하여,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,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

2. 탑티어(Top-Tier) 비자 본격 시행

-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*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‘탑티어(Top-Tier) 비자’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

* 반도체, 바이오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, 방산 분야 추가 예정

-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‘최우수인재 거주(F-2)’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.
-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·박사 학위를 취득하고,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, 1인당 GNI 3배(1억4986.5만원)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입니다.

【 탑티어(Top-Tier) 요건 】

- ▶ (기본) ^(학력) 세계대학 순위 **100위 이내의 석·박사** 학위 취득자로서
^(경력) 세계 **500대 기업**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, **8년 이상 근무경력**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, 박사 후 **5년 이상 연구경력**을 가진 자
 - ▶ (추가) ^(취업)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
^(소득)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**GNI 3배 이상**(1억4986.5만원)인 자
- ※ 연간 근로소득이 **1인당 GNI 4배**(1억9982만원) 이상인 경우 학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

- 또한, 해외 대학 · 기업뿐만 아니라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* 또는 기업** 출신도 대상에 해당합니다.

* QS University Ranking(국내 대학) : 서울대(31위), KAIST(53위), 연세대(56위), 고려대(67위), 포항공대(98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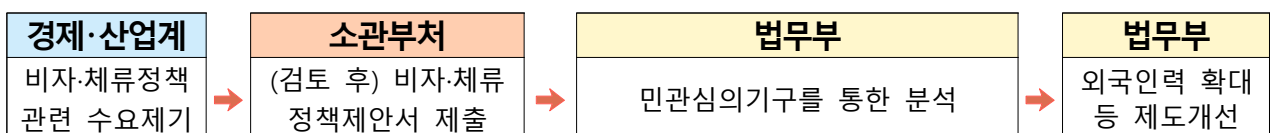
** Forbes Global 2000(국내 제조기업) : 삼성전자(21위), 현대자동차(93위), 기아자동차(234위), 포스코(412위), 현대모비스(465위), 삼성물산(493위)

- 탐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(F-2) 비자를 부여받고,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 - 또한,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‘우수인재·투자지원센터’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자적 방식의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고,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을 허용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. 이와 더불어 산업부의 “우수인재 자격인증(K-Tech Pass)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세제, 교육,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 - 아울러, 탐티어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라도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을 부여하고,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의 석사 이상 고급인재에게는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(D-10)*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탐색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- * 향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세계 2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학사 이상으로 확대 여부 검토 예정

3. 제1차 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 개최

- 법무부는 3. 26.(수) 경제계 및 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·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「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」*를 개최하여, 6개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.
- * [구성] △ (정부위원) 출입국정책단장(위원장)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 5인
 △ (민간위원) 이민·경제분야에 학식·경험이 풍부한 2인

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 개요



- '24년 11월 「신(新) 출입국·이민정책」의 후속조치로 “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”가 도입된 이래, 금년 2월까지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,
 - 법무부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인력 수급 전망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14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.
 - ※ 19건 중 5건은 비자·체류정책과 무관하거나 보완자료 제출하지 않아 상정하지 않음
 - 이번 협의회 심의 시에는 정책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계획, 경제·사회정책과의 정합성,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,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, 외국인 정착·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
- 협의회 심의 결과 ❶자동차 부품제조원, 판금·도장 정비원, 해기사 등 직종 신설, ❷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, ❸조선업 용접공, 베트남 소프트웨어(SW) 개발 인력 경력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되었습니다.
- 법무부는 '25년 상반기까지 협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,
 - 일부 제안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·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결정하였습니다.

《'25년 상반기 반영 예정 비자·체류정책 제안》

소관부처	제안
산업통상자원부	■ 조선업 용접공 일반기능인력(E-7-3) 경력요건 면제 ■ 자동차 부품제조원 일반기능인력(E-7-3) 직종 신설
보건복지부	■ 입양목적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 신설
국토교통부	■ 판금·도장 정비원 일반기능인력(E-7-3) 직종 신설
해양수산부	■ 외국인 해기사 전문직업(E-5) 직종 신설
중소벤처기업부	■ 베트남 소프트웨어(SW) 개발 전문인력 경력요건 완화

○ 한편,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, 국민 일자리 보호 또는 외국인 정착·적응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8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.

□ 법무부는 경제·산업계를 포함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향후에는 민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,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'25년 하반기에는 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.

□ 금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제도 및 탑티어 비자 제도는 광역권별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수요 반영 이민정책의 제도화,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우수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이와 함께, 법무부는 향후 비자·체류정책 제언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경제·산업계의 수요가 국민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□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“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,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.”고 하였습니다. 또한 “오늘부터 시행되는 “탑티어(Top-Tier) 비자”를 필두로, 현장 수요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「신(新) 출입국·이민정책」에서 표방한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.”고 하였습니다.

- 붙임 1. 광역지자체별 광역형 비자 주요 맞춤형 요건
2. 탑티어(Top-Tier) 비자 자격 요건
3. 제1회 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 수용안건 개요

[광역형 비자 제도]

담당 부서	법무부 출입국·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	책임자	과 장	김병철	(02-2110-4377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인	(02-2110-4364)

[탑티어(Top-Tier) 비자 도입]

담당 부서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주현	(02-210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승	(02-2100-4100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용훈	(044-203-42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은	(044-203-4227)

[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]

담당 부서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주현	(02-210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호	(02-2100-4067)

규제
새로고침
규제혁신이 국가성장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대상 자격	광역시자치체	대상 분야	주요 맞춤형 요건
유학 (D-2)	서울	• 시 핵심산업분야 이공계 (로봇 AI, 바이오, 핀테크 등)	•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 허용 •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최대 30시간)
	부산	• 반도체, 이차전자,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	• 부산광역시 지정 장학생 등에 대한 재정요건 1/2 완화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
	인천	• 외국대학교 국내캠퍼스	• 외국대학 국내캠퍼스 유학생 대상 체류기간 상한 확대(1년→2년)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
	광주	• AI 미래자동차과	• AI 미래 자동차 관련 학과 재정요건 1/2 완화
	강원	•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, 미래모빌리티, 미래에너지, 푸드테크, ICT) 유관 학과	• 등록금/생활비를 분할하여 재정요건 입증 •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최대 30시간)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
	충북	• 항공·화장품·식품·바이오, 뿌리산업, 복지인력, 자동차, 반도체, 이차전자 관련 학과	• 충북형 일·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/2 완화 •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최대 30시간)
	충남	• 농어촌지역 및 충남5대산업 전공학과(자동차부품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석유화학, 철강)	• 농어촌지역, 충남 5대 산업 전공, 충남형 일·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한 재정요건 1/2 완화 •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최대 30시간)
	전북	• 외국인전용 계약학과, 지역특화학과, 뿌리산업 양성대학 중심	• 지역산업 관련 대학 재정요건 1/2 완화 •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최대 30시간)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
	전남	• 지역 핵심산업바이오, 에너지, 조선, 화학, 철강, 복지, 관광 등 연계 학과	•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학과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/2 완화 •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최대 30시간) • 일부 전문직종 시간제 취업 허용(요양보호사, 주방장 및 조리사)
	제주	• 관광산업 RSE 산업 연계 학과	• 관광 분야 학과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완화(연간 1,000만 원 이상) •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(최대 30시간)
특정 활동 (E-7)	대구	• 대구 5대 신산업분야 (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, ABB(AI, Bigdata, Blockchain)	• 학력 및 경력요건 완화* * (학력) 석사 → 학사, 학사 → 전문학사 등 (경력) 5년 이상 → 3년 이상 • 대구 신산업분야 관련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 완화
	경기	• 산업기술인력 (컴퓨터 전자공학 기술자 등) • 요양보호사	• 외국 대학 학사 학위자 중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학력 요건 완화* * 도입직종과 연관성 없는 학위인 경우에도 취업 허용 • 요양보호사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완화
	경북	• 광제조업 관련 이공계인재 • 요양보호사	• 경북 지정 해외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자격 요건 완화* * 전문학사 이상 및 1년 이상 경력 등 • 요양보호사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완화
	경남	• 자회사 우수인재	• 해외 자회사 우수인력 도입특례 (해외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 시 학력 요건 면제)

첨단분야 최우수인재로서 연봉·학력·경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- 1. (첨단분야)**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또는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산업, 벤처·창업, 연구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야

⇒ (산업분야) 반도체, 바이오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산업('25. 4월 기준)

(「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」 별표 1) * 상반기 중 로봇, 방산 추가지정 예정

- 2. (최우수인재)** 첨단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,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고급인재

- 3. (연봉)** 1인당 GNI 3배(1억4986.5만 원)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
(2024년 기준 1인당 GNI는 4,995.5만 원(한국은행))

⇒ 1인당 GNI 4배(1억9982만 원) 이상인 경우, 아래 학력 및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 인정

- 4. (학력)**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
-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s
-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
- ③ US News Global University Rankings
- ④ QS World University Rankings,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
- ⑤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; by subject - Engineering
- ⑥ US News Global University Rankings; by subject - Engineering

- 5. (경력)**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

- 1) (기업 근무)** 세계적 기업*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,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

* ① Forbes Global 2000(500위 이내), ② Fortune Global 500(500위 이내), ③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(100위 이내)

- 2) (연구기관 근무)** 세계적 연구기관*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

* ① 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, ② 세계적 기업의 부설 연구소, ③ 정부 주도 연구소

(1) 일반기능인력(E-7-3) 용접공 경력요건 면제(산업통상자원부)

- (제안사항) 용접공 경력요건 폐지 또는 조건부* 경력요건 면제 추진
 - * 산업부 지정기관이 활용도는 높지만 역량확보가 어려운 용접자세를 추가하여 기량검증할 경우
- (심의 결과) '25년 하반기까지 유학생 등 체류외국인 교육·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조건으로 2년간 해당 제안을 시범운영하되,
 - 2년 후 ❶운영계획 이행 및 ❷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모니터링 후 정식 시행 여부 검토

(2) 전문인력(E-7-1) 베트남 SW인력 경력요건 완화(중소벤처기업부)

- (제안사항) 공공기관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)이 추천한 베트남 소프트웨어(SW) 개발인력이 기량검증을 거쳐 중소·벤처기업에 취업할 경우, 경력 1년 요건 면제
- (심의 결과) '25년 하반기까지 유학생 등 체류외국인 교육·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조건으로, 2년간 해당 제안을 시범운영하되,
 - 2년 후 ❶운영계획 이행 및 ❷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모니터링 후 정식 시행 여부 검토

(3) 일반기능인력(E-7-3) 자동차 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(산업통상자원부)

- (제안사항)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·성형·용접업무 수행자 대상 일반기능인력(E-7-3) 직종 신설,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연간 100명* 범위 내 도입
 - * 금형 40명, 성형 30명, 용접 30명
- (심의 결과) 연간 100명 범위에서 2년간 시범운영하되,
 - 2년 후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모니터링 후 정식 시행 여부 검토

(4) 전문직업(E-5) 외국인 해기사 직종 신설(해양수산부)

- (제안사항) ① 외국인 해기사 전문직업(E-5) 체류자격 부여 및 국제선박 승선기간을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, ② 전문인력(E-7-1) 선박관리전문가 직종 비자 특례를 전문직업(E-5) 비자에도 규정
- (심의 결과) 국내 해기사 인력이 부족한 점,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장치가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

(5) 입양목적 입국자 체류자격 신설(보건복지부)

- (제안사항) 국내로의 입양허가가 완료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국적 아동에게 부여 가능한 체류자격 신설
※ 국내로 입양된 아동 현황 : ('22년) 182명, ('23년) 150명 등 총 81,532명
- (심의 결과) '25. 7월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 시행 예정이므로, 입양 절차 진행 중인 아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설하되,
 - 2년간 시범운영 후 정식 제도화 여부 검토

(6) 일반기능인력(E-7-3) 자동차 판금·도장 분야 직종 신설(국토교통부)

- (제안사항) 일반기능인력(E-7-3) 도입 직종에 자동차 판금정비원 및 도장정비원을 추가하여 연간 330명 도입 추진
- (심의 결과) '25년 하반기까지 유학생 등 체류외국인 교육·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조건으로, 2년간 해당 제안을 시범운영하되,
 - 2년 후 ❶ 운영계획 이행 및 ❷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모니터링 후 정식 시행 여부 검토